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. 11. 13 선고 2024가단1529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0. 16.

판결 선고2024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,
가. 전남 함평군 C[도로명주소 : 전남 함평군 D] 지상 경량 철골 구조 조립식판넬 지붕 1층 단독주택
92.01㎡을 인도하고,
나. 각 2023. 1. 1.부터 위 가항 기재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
지급하라1)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노연주

별지

1) 원고(선정당사자)는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월 3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바,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분할하여 각 월 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.